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회의 신청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4.1.9 공포 및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을 추가(안 제13조의4제3호의2)

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회의 세부 신청요건 삭제(현행 제14조의5제2항 삭제)

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납품대금조정협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탁기업의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14조의5제3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사전규제심사 예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4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업

제14조의5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가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 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3조의4(대·중소기업상생협력 기금의 용도) ----- ----- ----- -----.
1. ~ 3. (생 략) <u><신 설></u>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사 업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14조의5(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생 략)	제14조의5(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 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 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수탁· 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수탁·위 탁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직전 조정한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u><삭 제></u>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 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소기업중앙회”로 한다)가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2. (생략)

④ ~ ⑦ (생략)

③ -----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기업”이란 위탁기업 중 -----

--.

1. 2.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924